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김창국 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가운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3-4745 천리안 하이텔/ 나우콤/ 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및 법조담당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담당: 이정운: 795-5918)
제 목 경인선 손해배상청구소송 1차 재판
날 짜 1996. 4. 25. (총 4 쪽)

보 도 협 조 요 청 서

참여연대, 경인선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재판
철도청, 답변서에서 청구원인 전면부인

일시 및 장소: 1996년 4월 25일 오전 11시, 민사 16부 565호 법정

1. 바른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金重培 吳在植 金昌國) 공익소송센터(소장 安泳燾)는 지난 3월 28일 국가를 상대로 경인선의 상습적인 지연운행, 잦은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사건번호 96가합19012)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3. 본 소송에 대한 1차 재판이 1996년 4월 25일 오전 11시 민사제16부 565호 법정에서 열렸다.
4. 1차 재판에서 피고 대한민국(소송수행자 이동희)은 재판부에 낸 답변서에서 "피고가 경인선을 건설,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원인 사실은 이를 모두 부인합니다"라며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해 일단 전면부인함으로써 불성실함을 드러냈다
5. 철도청은 지난 2월 25일 전철지연원인에 대한 자체조사결과에서 전철의 지연책임은 지연원인 중 68%가 철도청 책임이다라는 자체조사결과를 발표한 사실이 있다.(1996년 2월 25일)

출퇴근 시간 수도권 전철지연원인
(경인 경수선 오전 7-9시 오후 6-8시)

* 주심: 황인행 (부장판사)

배석판사: 조해희, 허규영

지 연 원 인	지 연 시 간
지하철 운전정리	5,310분(56%)
공사구간 서행	1,728분(18%)
승객승하차 지연	1,356분(14%)
시설고장장애	1,162분(12%)
총 계	9,556분

* 자료 : 동아일보 96. 2. 26

6. 그러나 본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한 답변에서는 이를 전면부인하고 있다. 답변서의 의미는
 첫째, 철도청 자체 조사결과에 대해 스스로 부인하고 있고
 둘째, 전철의 지연,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셋째, 시설물의 설치 뿐만 아니라 보수, 유지, 관리를 하여야 할 국가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7. 스스로 밝힌 사실에 대해서 조차 부인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당연히 받아야 할 시민의 권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8. 본 소송이 제기된 후에도 전철의 지연운행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하기는 커녕 (해)오하려 본 소송을 제기한 원인에 대해서 전면부인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관료주의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며,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는커녕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 하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에 다름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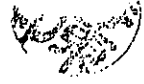
9. 참여연대는 이 재판의 효과적인 수행과 함께 국가 공공서비스의 횡포에 대한 제도개혁을 위하여 관련 단체, 시민들과 더불어 후속 추가소송, 타고싶은 1호선 만들기 운동 등 시민교통권 확보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¹⁰
 11. 2차 재판은 5월 23일 오후 4시 민사제16부 565호 법정에서 열린다. 2차 재판에서는 관련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 첨부 : 피고 답변서 1부

끝

답 변 서



사 건 96 가합 19012 손해배상

원 고 최 형 욱 외 5

피 고 대 한 민 국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답 변 취 지

1. 본안에 대한 답변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바랍니다.

2. 본안에 대한 답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바랍니다.

답 변 사 실

1. 본안전 답변

이 사건은 국가배상법 제9조에 의하여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은 위와같은 전심절차를 거친바 없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겠습니다.

2. 본안에 대한 답변

피고가 경인선을 건설,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원인 사실은 이를 모두 부인합니다.

1996. 4.

위 피 고 대 한 민 국

소송수행자 이 동 회

(청도청)

서울지방법원

제 16 민사부

귀 중